김중부 외국변호사

TEL.
02-3479-7597

MAIL.
zfjin@barunlaw.com

구성원 소개

김중부 외국변호사는 바른의 중국팀을 이끄는 중국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김중부 외국변호사는 2008년 중국변호사 자격을 획득하고 중국 광동신달(信達)로펌 베이징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2020년부터 바른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중부 외국변호사는 중국 현지로펌에서 10년간 축적한 상장자문업무를 토대로 현재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기업과 중국계자본을 위해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기업의 중국내 중재 및 소송에 대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 M&A 및 기업지배구조, 국제거래 및 투자, 중국내 파산회생 및 철수 등 관련 자문, 중국내 중재 및 소송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중부 외국변호사는 중국인민대학한국교우회 회장, 중국인민대학교우기업가협회 이사, 한중통상진흥원 이사, 중국재한교민총회 법률자문위원, 세계한인무역협회 선전지회 법률고문, 중국CCTV 서울지국의 법률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학력

1995	중국인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8	중국변호사자격증 취득
2013	연세대학교 글로벌교육원 국제전략가과정 수료
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 수료(상법전공, 법학석사)
202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AMP91기 졸업

경력

1997~2004	삼성SDI 중국선전법인 영업부 과장
2004~2009	선전메그미트전기주식회사 부사장
2009~2016	광동신달(信達)변호사사무소 변호사
2009~현재	광동성조선족협회 법률고문
2010~현재	세계한인무역협회 선전지회 법률고문
2014~현재	북경대학교 법경제학연구센터 특별고문
2016~현재	선전시남해(藍海)현대법률서비스센터 특별고문
2017~2020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국변호사
2017~현재	중국CCTV 서울지국 법률자문위원
2018~현재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법률자문위원
2020~현재	BIMC(Benchmark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 조정위원

주요업무분야

인사노무
기업자문
M&A
국제거래/투자
중국
국제중재 및 분쟁
해외소송
영업비밀·산업기술·기업정보 보호

2020~현재	ICMCSQ(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Center, Shenzhen Qianhai) 조정위원
2022~현재	한중경제통상진흥원 이사
2023~현재	중국인민대학 한국교우회 회장
2024~현재	중국인민대학 교우기업가협회 이사
2020~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국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 2023 ~ 현 재 한국중견기업 중국내 분쟁해결 대리
- 2022 ~ 현 재 중국하이항그룹 회생절차에 한국대형기업 채권신고 및 회수 대리
- 2021 ~ 현 재 중국화천그룹 회생절차에 한국중견기업 채권신고 및 회수 대리
- 2020 ~ 현 재 중국계 은행 한국내 소송건 자문
- 2020 중국부동산기업 한국 투자 및 송무 관련 자문
- 2019 한국기업 H사 중국내 투자 엑시트 관련 외환법 자문
- 2019 한국기업 L사 중국사업 철수 관련 자문
- 2018 ~ 2019 한국기업 Y사 중국내 소송 자문
- 2018 중국업체의 국내 K증권사 구주 인수에 관한 자문
- 2018 글로벌 화장품업체 G사 한국기업 인수 과정 중국법 이슈 자문
- 2017 중국심천에 상장한 C사의 한국기업 M&A 관련 자문
- 2017 CCTV 평창올림픽 법률 자문
- 2016 중국베이징 S사 OTC 상장에 관한 자문
- 2016 중국베이징 B사 OTC 상장에 관한 자문
- 2015 중국 광동 B사 심천증권시장 기업공개발행(IPO) 의 법률자문
- 2014 중철주식회사 광물교역플랫폼회사 M&A 자문
- 2013 중국 Shenzhen INVT 상장회사의 M&A 관련 자문
- 2012 중국 상장회사 Xinjiang Chalkis 기업회생에 관한 자문
- 2012 중국 상장회사 Powerise Information Technology 기업회생에 관한 자문
- 2011 중국 심천 A사 심천증권시장 기업공개발행(IPO)에 관한 자문
- 2009 한국 타이어업체 대리해 재심(최고인민법원)절차 진행